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 구체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9호)

2024. 11.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정치활동 관여 행위 구체화 등	3
2.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생략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11
※ 참고자료	18
1.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금지 의무 개정 연혁	18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2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 · 조 국 · 박지원 · 이인영 · 이수진 · 조정식
박민규 · 이기현 · 전재수 · 강준현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0.
3. 회부연월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1조 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 제기 및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무의 집행을 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치활동 관여 행위 구체화 등

개정안 제6조제2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개정안 제11조제2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하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조직) ① (생략)	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u>수집·분석하기</u>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u>수집·분석해서는 아니</u> <u>되며 이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생략)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u>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에 해당하는 행위	6. ----- ----- ----- ----- <u>제5호까지</u> 및 <u>제5호의2</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는 다음과 같음.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조항의 연혁을 보면,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전부개정으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으로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며, 정치관여죄 규정(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을 신설하였음.

2014년 1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으로 정치활동 관여 행위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 신고 시 비밀 엄수 의무 적용 배제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시하면서 정치관여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하였고,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시에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으로 하여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참고 1>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금지

의무 개정 연혁).

개정안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므로,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수집·분석 금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제1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추가될 경우 해당 행위는 제11조에 따른 정치 관여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명확성 원칙은 범죄의 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함. 즉,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舊 「국가보안법」 제8조제1항의 구성요건 중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부분은 포괄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¹⁾.

1)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

입법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2), 「감사원법」 3), 「검찰청법」 4), 「경찰공무원법」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 등 공

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소정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4)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

무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명시한 사례는 없음.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7)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다른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제5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현행법 제11조제2항에 정치 관여 행

知)하는 행위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가정보원법」만 다른 법률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⁸⁾.

결론적으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구성요건의 명확성 요청 및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유형을 정당·정치단체 결성 등의 지원·방해, 의견 또는 사실 유포,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선거운동, 집회 사주·유도·협박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항과의 균형성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 제6조제2항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수집·분석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구체적 행위 양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 관여 목적 또는 우려가 있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해당 조항(제6조)⁹⁾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관련 규정으로서 조

8)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7.

9)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

직 및 지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조항인 점, 현행법 제3조¹⁰⁾에서 수집 목적에 적합한 정보 수집 및 직무 외 용도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규정(제11조)을 두고 있어 제6조제2항의 개정은 제11조와 중복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임¹¹⁾.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10) 「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국가정보원, 전제 의견서.

2.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생략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현행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¹²⁾에 따른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의제기 절차 없이도 직무 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시 비밀 엄수 의무 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11조제7항은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② (생략)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u>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u>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그 직무</u> <u>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u>
④ 직원이 <u>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 ----- <u>오로지</u> ----- ----- ----- ----- ----- -----.
⑤ · ⑥ (생략) <u><신설></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u>

개정안은 정치활동 관련 행위 금지 및 신고자 보호 관련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 이의제기 및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의제기 절차 없이도 직무 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자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취급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여 합당한 절차 없이 외부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정보기관 업무 수행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하며, 외부 신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개인신상 및 직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 무분별하게 폭로 또는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¹³⁾.

입법례를 보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¹⁴⁾에서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13) “보안 문제로 국정원 자체 성과도 외부에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상황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업무 차질 불가피”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 거부 사례는 없다는 설명임.

국가정보원의 업무 성격상 정치활동 관여 행위는 조직 내부의 직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고,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등 내부 절차의 개시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

다만, 이의제기를 통한 자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 및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체계 균형에 더하여, 업무의 기밀성 보장 필요성이 중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1조제7항은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가정보원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 대상기관(제6조),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제8조), 신변보호 조치(제13조), 형사·징계 책임 등의 감면(제14조),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제15조제2항),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불이익조치의 추정(제23조), 상담소·의료기관 등에 대한 협조·원조 요청(제25조), 포상금(제26조의3) 및 구조금(제27조) 지급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참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 「국가정보원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교 >

구분	국가정보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대상	수사기관(제11조제4항)	-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 규제·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이상 제6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8조의3)
보상	-	- 포상금(제26조의3) - 구조금(제27조)
신고자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제11조제6항)	- 신변보호 조치(제13조) - 책임의 감면(형, 징계 또는 행정 처분 감경·면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미위반 간주)(제14조) -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제1항) -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제15조 제2항)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 보호조치(제17조) 및 특별보호조치 (제20조의2) -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 -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의료기관 등에 대한 협조·원조 요청(제25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토대로 정리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이의제기 절차 없이도 직무 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시 비밀 엄수 의무 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고 시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¹⁵⁾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집행 시에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신고는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¹⁶⁾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바, 조직 외부에 대한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 ③ (생략)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오히려 정치권과의 접촉 및 직무상 비밀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의견¹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에서 불이익조치 금지(제11조제6항)를 제외하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국가정보원 내부 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신고자 보호 규정 중 정치활동 관여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위해서 적절한 준용 가능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614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시 오히려 정치권과의 접촉이 용이한 결과를 초래, 정치 관여 소지가 증폭되는 등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더라도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를 완전히 무력화” (국가정보원, 전제 의견서)

※ 참고자료

1.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금지 의무 개정 연혁

근거	규정
「중앙정보부법」 (법률 제1510호, 1963.12.14. 전부개정)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안전기획부법」 (법률 제4708호, 1994.1.5. 일부개정)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18조(정치관여죄) 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u>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근 거	규 정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266호, 2014.1.14. 일부개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근거	규정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7646호, 2020.12.15. 전부개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u>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u>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u>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 거	규 정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